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안 제10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 지역 등의 지정협의(30ha이상), 산지전용(30ha,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은 660㎡ 이상)

나.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 확대 (안 제7조)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다. 국유림내 토석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제2항)

국유림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소규모 (1,000m³ 미만) 토석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던 것을 인근의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 기준 매각대금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안 별표1, 안 별표 1의3)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시 비탈면 수직높이, 표고, 보전산지내 평균임목축적 등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마. 토석채취지 등의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42조제6항)

대단위 산지전용이 중단된 지역, 채석 종료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가 새롭게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월 ~ 2023. 2월)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의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의제하는 행정처분을 협의 요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예치된 복구비가 제40조 제3항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에는 그 지급 보증서 등의 기간은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세부사항란 가목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가목 중 “우주센터시설”을 “우주센터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라목 단서 중 “도로·철도·댐·저수지·공항”을 “도로·철도·댐·저수지·공항,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저수지”를 “저수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로 한다.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검토 관련 서류(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검토 관련 서류(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수발전시설의 산지저용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 또는 연구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특 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 ----- ----- ----- ----- ----- ----- ----- ----- ----- ----- ----- -----.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① (생략)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1. ~ 5. (생략)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5년 -----

-----.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 제3호의 임업인

3. (생 략)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
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
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
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다. ~ 카. (생 략)

2. · 3. (생 략)

----- 제2호
· 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체 등록을 한 자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5
년 -----

-----.

다. ~ 카.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
할납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
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
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
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
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
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
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
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
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
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
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
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

「기술보증기금법」-----
-- 기술보증기금, -----

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생략)

⑤ (생략)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생략)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수 있으며, 1천세제곱미터 미만

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

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

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인근

에 있는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③ ~ ⑦ (생략)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 ⑦ (생략)	<u>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의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의제하는 행정처분을 협의 요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예치된 복구비가 제40조 제3항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에는 그 지급 보증서 등의 기간은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u> <u>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u>
--	---